

이.호 재

8-10

평양국제토론회 토론문

일본의 진후처리에 관한 사상적문제에 대하여

93, 11, 7~8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전국련락

협의회 사무국장 소라노 요시히로

일본의 전후처리에 관한 사상적문제에 대하여

나는 일본의 전후처리에 관한 약간의 사상적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일본이 범한 범죄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에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폭력적으로 빼앗아낸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감행한 토지수탈, 물자의 약탈, 수백만에 달하는 강제련행, 10만에 달하는 《종군위안부》인 여성들의 련행 등은 명백히 침략에 의한 조선민족노예화 정책이었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의 구호밑에 감행된 중국 및 동남아세아전역에 대한 침략전쟁도 아세아민족들에 대한 노예화를 노린 것이었다. 여기서 일본은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민족들의 해아릴수 없이 많은 생명을 빼앗았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육체적희생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행위는 인류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한 범죄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남아있으려면 죄과의 정도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며 두번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과거에서 철저하게 교훈을 찾는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까지 일본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

2. 일본정부의 전후처리에 대한 립장

일본의 전후처리는 이미 패망직전에 시작되였다.

야마구찌현로무보국회에서 전시에 수천명의 조선인을 징용하여 련행했다는것을 인정한 요시다 세이지는 전후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그는 《조선인 징용에 대한 공식기록과 관계문서는 패망직후에 내무차관의 통첩에 따라 전국 각 도도부현 지사의 극비긴급 명령서가 각 경찰서장앞으로 송달되어 완전한 폐기소각처분이 진행되였다》(《나의 전쟁범죄-조선인 강제련행》 3.1서방 1983년)고 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전후에 대처하여 대대적인 증거인멸을 감행했던것이다.

다음으로 1945년 9월 20일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련맹이 강제련행된 조선사람에 대한 밀린 임금을 기

업측에 요구하였을 때 일본정부는 지불을 거부하고 그것을 국고에 보관하라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그 돈은 오늘까지도 일본의 국고에 보관된 상태로 있다.

남조선과의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일본정부의 구보따수석대표는 《일본의 통치는 조선에 유리한 국면도 있었다》고 발언함으로써 식민지통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남조선측에 《대일청구 8개항목》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였는데 반대로 남조선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라 《자료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자료가 일부 남아있었다는것이 밝혀졌다.

결국 남조선과는 사죄도 보상도 없이 《경제협력》만으로 처리하고말았다.

1954년 버마로부터 시작되고 1977년 몽골에서 끝난 다른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처리에서 일본정부는 사죄도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배상금을 될수록 낮게 누르려는 자세로 립하였고 교섭도중에 배상이 아니라 《투자》하는것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에 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드디어 1990년에 있는 3당공동선언을 계기로 국교정상화교섭이 시작되었는데 《일한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한나라가 두 개 국가로 갈라질 때의 법적처리방법
인 재산청구권의 테두리안에서만 교섭에 응하려 하고 있다.

그것조차도 핵문제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어 교섭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호소가와수상은 올해 8월 10일 《나 자신은 침략 전
쟁이었다,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중전의 정부에 비하여 일정한 전진을 보이었으나 조약에
의한 처리가 끝난 나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결착되었다
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가 취해온 이와 같은 입장은 참으로 부끄럽
기 그지없다고밖에 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담만
할수는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3. 일본이 책임을 모면할수 있었던 객관적요인

일본이 이와 같이 책임을 모면하고 가만히 있었던
객관적요인은 전후 아세아를 지배한 국제정치에 있다.

다시말하여 랭전이다. 랭전하에서는 반공이 모든것에
우선되고 일본의 과거의 부정의는 구석에 밀리고말았다.

랭전은 조선, 중국 등의 분단을 가져왔으며 침략을
당한 피해국들이 일치하게 책임을 추궁할 마당을 빼앗았
다.

그러나 랭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이 책임을 모면해온
특수한 정치정세는 변화되어가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공통규범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일본의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임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또한 탕전의 종식은 남
북분단을 극복시킬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일
본은 스스로가 방치하여온 전후처리에서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정부와 일본국민의 태만에
의하여 빚어진 결과이며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와 일본국
민은 패전당시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다른 나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점에서 과거를 검증하여야 한다.

4. 주체적요인

일본이 책임을 모면해올수 있었던 주체적요인은 역시 랑전에 의해 낡은 세력이 무탈하게 존재해온데 있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의 맥아더사령부는 전시내각의 많은 정치가들이 전후 일본정부안에서 활동할 것을 허용하였다. 기시 노부스케수상은 이전 비급전쟁범죄자였으며 요시다 시게루수상은 이전 대일본로무보국회의 회장이었다.

전후 일본을 지배한 이러한 정치가들의 조선에 대한 관점은 식민지통치시대의 그것과 아무런 변함이 없었으며 과거를 검증하는 자세를 가지고있지 않았다.

정치가들뿐만아니라 침략전쟁을 안받침한 사상과 체제의 적지 않은 부분들이 전후의 일본사회에 고스란히 존속되었다. 천황제도 그 중요한 하나이다.

그러나 랑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이 책임을 모면해온 특수한 정치정세는 변화되어가고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공통 규범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일본의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엄한 눈길을 돌리고있다. 또한 랑전의 종식은 남북분단을 극복시킬수 있게 만들고있다. 이렇게 되어 일본은 스스로가 방치하여온 전후처리에서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의 태반에 의하여 빚어진

결과이며 지금이야말로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은 패전당시의 원점에 되돌아가서 다른 나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점에서 과거를 검증하여야 한다.

5. 침략의 관점에서 본 과거의 검증

일본의 침략전쟁을 안받침한 사상과 체제는 다름이 아니라 신권천황제와 철저한 국가주의체제였다. 천황제는 명치유신직후의 단계에서는 아직 취약하였으나 점차 국가신도와 결합됨으로써 천황은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교육칙어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교육의 국가통제를 통하여 일본인의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시켜나갔다.

주권은 인민이 아니라 천황에게 있었으며 천황앞에서 일본인 모두가 절대적인 충성을 다지는 노예적존재로 되었다.

이 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역적》으로 몰리우고 비판세력은 《대역사건》이래 특별고능경찰의 철저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상과 체제가 외부에 대하여서는 황포한 야수로 되어 달려들었던 것이다.

개개의 일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문제로 되지 않았고 그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그 결과 전쟁에 의하여 일본인도 톡톡히 희생을 치루었던 것이다.

다른 민족을 노예로 취급하고 자기자신도 침략전쟁을 위한 노예적인 손발이 되었던 역사를 일본국민은 똑똑히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그것이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방파제로 된다.

이것을 리행할수 있으면 과거 일본이 오만하게 행동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겠는가를 리해할수 있을 것이다.

6.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종군위안부로서 성노예로 되었던 여성들과 강제련행당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람들은 마음과 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채 오늘까지 살아왔다.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이 극도로 유린당하였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명예회복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과거에 감행한 행위는 물론 전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계속 고통을 주고있다.

이것 역시 인권침해이다. 현재도 그것이 계속되고있

다.

이러한 고통을 계속 주는 행위를 일본은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것으로 할 수 없으나 상처를 아물게 할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명예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결코 금전이 일차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가해자측이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행위였다는것을 인정할 때에만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 사람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심으로부터의 반성을 담아 보상할 때 빼앗긴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는다해도 비로서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게 될 것이다.

7. 일본국 헌법과 전후처리

앞에서 말한 내용은 실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헌법에 담겨져있는 국민주권, 평화, 기본적인권의 존중주의가 전쟁전의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으며 그것을 부정한 기초우에 서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신권정황제를 축으로 한 극도의 국가주의가 안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산생시켰으며 그 결과 국민전체와 아세아나라들에 비참한 피해를 초래케 했다는 가슴아픈 반성의 기초우에 서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역시 전쟁범죄의 극치를 이룬 독일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치스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한 서독 기본법 제 1 조에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에 있어서는 통하는 데가 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속, 억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한 헌법서문은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하여 서술하면서도 이에 역행한 우리나라의 경험의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과거가 산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할 때 완전한 것으로 된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선언하면서도 과거의 《전제와 예속》 《억압과 편협》이 낳은 결과들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과거의 반성은 너무나도 공허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 일본인은 헌법서문에 있는 《일본국민은 ... 사람들사이의 호상관계들 지배하는 숭고한 리상을 깊이 자각한다》라는 말을 깊이 음미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근 50년이나 방치하여온 자신의 책임을 조용히 돌이켜보아야 한다.